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은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7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0. 10.

발의의원 : 김은영 의원,

신동윤 의원, 곽동환 의원

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이 겪는 생활고와 고립감을 줄일 경제적·정서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
다. 자립지원계획 수립,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라.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~제7조)

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자립준비청년등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2.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
제3조(군수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립지원계획 수립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자

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자립지원계획(이하 “자립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
2.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3.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·시행할 수 있다.

1.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
2. 진로·진학 교육 지원사업
3. 취업·창업 지원사업
4.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
5. 신체적·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
6.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
7. 그 밖에 군수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

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, 교부절차 및 실적 보고 등 일반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위탁 등)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,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립준비청년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이 조례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본다.

제3조(자립준비청년등 중 일부 적용례)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9일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□ 「**아동복지법(법률)**」(2023. 8. 8. 일부개정, 2024. 2. 9. 시행)

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- 1의2.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“자산형성지원”이라 한다)
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
2.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
3.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·운영
2.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
3.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4.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□ 「**아동복지법 시행령**」(2023.9.26. 타법개정·시행)

제38조(자립지원)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아동복지시설(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)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

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
2.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
3.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